【2012. 8. 23(목) 강원일보】

지역업체 의무 하도급 시행 촉구

올림픽특별법 시행령 공포

2019년 3월31일까지 효력 … 지원 근거 모두 마련

도내 건설단체 회장단 오늘 요구 담은 성명 발표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공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시행령 공포를 계기로 2019년 3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포된 특별법과 함께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된 셈이다. 시행령에는 대회 관련시설 건설 및 대회 운영에 관한 지원사항,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시행 절차와 방법 등이 명시됐다. 경기장은 75% 이상, 진입도로는 70%가 모법인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며 개·폐회식장은 그 외 대회 직접 관련시설로 시행령에 규정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특구 내 경관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비율도 기재부 장관이 결정한다.

지역기업 우대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역시 기재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협의로 진행된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대테러 및 안전대책,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대회 지원위원회 운영,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 수립,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절차 및 세부내용도 적시됐다.

특별법 시행령 공포와 관련,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을 비롯한 도내 건설단체 회장단은 23일 오후 2시 도청 기자실에서 도내 건설단체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성명서에는 △동계올림픽 공사·물품·용역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공사량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 내 생산 물품·자재·장비·용역 등의 우선 사용 △지역업체 의무 하도급(계약금액의 30% 이상)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단체 회장단은 지역업체의 참여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특별법 제정취지를 조속히 실현하고 실질적인 우대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규칙 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민왕기·하위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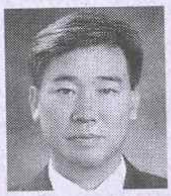

◇정동기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23일 오후2시 도청 기자실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 시행령 공포와 관련 도내 건설단체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

【2012. 8. 23(목) 강원도민일보】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공포

道 요구 대부분 반영 안돼

경기장 조성 등 차질 우려… 도 "개정 통해 반영 최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됐지만 중요한 도 요구사안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해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기장과 진입도로 조성 사업 이외도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해 70% 이상의 국비 지원율 명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는 추정가격 300억원 경우 30% 이상, 100억~300억원은 49%까지 지역 업체 참여폭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김동기)는 23일 오전 강원도청을 방문,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업체 우대 조항을 명시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여기에 동계올림픽에 반드시 필요한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 사업도 시행령에 반영되지 못해 '식수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도는 공포된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의 유·불리 조항을 면밀히 따져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부서별로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각 부서의 의견이 수렴된 후 전체적인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기를 두고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성철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총괄기획과장은 "국비 지원율과 지역우대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 조항을 조목조목 따진 후 개정을 통해 도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평창 오륜 특별법 "지역 업체 우대해야"

도내 건설단체

대한건설협회 도회를 비롯한 도내 건설단체들이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 공포와 관련, 지역업체 우대방안 등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정동기)는 23일 오후 2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 내에 지역업체 우대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동계올림픽 공사·물품·용역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량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업체 참여확대 △지역 내 생산물품·자재·용역 등의 우선 사용 △지역업체 의무하도급 시행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동기 회장은 "정부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특별법 제정취지를 조속히 실현하고 실질적인 우대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발주 물량 180% 증가

국토부 내년 300억 이상 대형공사 해당

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입찰방법 심의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추하면 2013년도에는 300억 이상 대형공사의 발주물량이 올해 대비 약 180% 늘어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발주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물량이 지난해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돼 그동안 침체를 보였던 공공 건설시장이 다음해 이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같은 전망은 원주~강릉 철도 및 중앙선 등 SOC 기반시설공사가 착수되는 데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과 주한미군 이전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입찰방법 심의제도란 추정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등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방법 심의를 받아 입찰방식을 결정하는 제도로, 입찰방법 심의가 이뤄지면 턴키대안이나 기술제안은 약 6개월~1년 뒤, 최저가의 경우 평균 1~2년 뒤 발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입찰방법 심의를 진행했지만 심의 실적이 97건, 10조3468억원에 그쳤기 때문에 올해 심의 물량은 건수로는 74.2%, 금액으로는 105.5% 가량 늘어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심의 실적이 약 340건에 달해 작년(190건)보다 약 8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 상반기 입찰방법 심의를 통과한 대형공사로는 원주~강릉 철도 11개 공구를 비롯해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12개 공구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5개 공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0개 공구, 주한미군기지 이전 12개 사업 등이 주목된다.

박현철 lawtopia@kado.net